



**Department of  
Education**

Joel I. Klein  
Chancellor

**Martine Guerrier**  
Chief Family  
Engagement Officer  
askmartine@schools.nyc.gov

**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49 Chambers Street, Rm 503  
New York, NY 10007

(212) 374-2323 #tel  
(212) 374-0076 #fax

부모님과<sup>1</sup> 교육 커뮤니티간의 활동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각 아동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파트너로서, 학부모님은 특정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그것은 이 안내문 및 교육감 규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재학하도록 하는 권리**

학부모님은 안전하고 협조적인 학습 환경이 제공되는 공립학교의 무상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도록 할 권리 - 순서와는 상관없이.
2. 장애아인 경우, 평가를 통해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
3. 자녀가 영어학습학생(English Language Learner)인 경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중 언어 교육 또는 ESL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권리.
4. 자녀가 교육청이 매년 채택하는 학교 일정에 따라 모든 수업 일정을 이수하도록 할 권리.
5. 자녀가 실제 또는 외견상의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적체성, 성별 표현, 종교, 출신국적, 시민권/이민자 신분상태, 성적 성향, 신체적 및/또는 감정적 상태, 장애 여부, 결혼 여부, 그리고 정치적 신조에 의거한 차별, 부당한 대우나 편견이 없는 안전하고 협조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
6. 자녀가 교육청의 학생 권리와 의무 조항(Bill of Student Rights

<sup>1</sup> 이 문서에서 지칭하는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그 외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and Responsibilities)에 명시된 모든 자격을 부여 받도록 할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뉴욕시 교육청과 산하 학교들은 학부모님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학부모님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교육감 규정 A-663 에 따라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교육청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하여 언어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
2. 학교, 학군 및 보로의 부모 상담을 요구하는 모든 정책, 계획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학교 시스템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관련 최신 정보, 해당 서비스 자격 요건 및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예: 교통, 급식 서비스, 보건 서비스, 영어학습학생 수업, 치료 교육, 특수 교육 등등)
4. 교육 프로그램, 출석 및 품행과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기대치에 대한 문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자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사용될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 수업 과목 또는 커리큘럼 지도 등을 (제한되지 않고) 포함하는 자녀의 수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7.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밀 유지를 보장받을 권리.
8. 학교가 요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로 자녀의 교육기록부를 시찰하고 검토할 권리

9. 요청을 한 후 이상적인 시간 이내에 지정된 교직원으로부터 자녀의 교육기록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가질 권리
10.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록을 외부 기관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또한 상급 학교 및 모병 담당 기관에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할 권리.
11. 자녀의 교육기록부를 자녀가 전학간 다른 학교로 신속하게 보내지도록 할 권리.
12.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과 교육감 규정 A-820 에서 동의 없는 공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교육기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에 대해 동의할 권리. 한 가지 예외, 즉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을 가진 학교 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의 행정인으로 고용된 사람, 지도교사, 교사, 또는 지원 직원의 일원을 포함하지만, 그 목록에 반드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그가 자신의 전문적인 책임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록부를 검토해야 할 경우에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청이 있을 시에, 학교는 동의 없이 교육기록부를 학생이 추구하거나 입학할 의도가 있는 다른 학교의 관계자에게 공개합니다.
13. 학교가 FERPA 의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미국 연방 교육부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 FERPA 를 담당하는 부서 이름과 주소: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5901

####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학부모님은 자녀의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자신들의 학교 커뮤니티에서 환영 받고, 존경 받으며 지원받을 권리.
2. 모든 학교 직원으로부터 예우 받을 권리,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출신국, 성별, 연령, 민족적 배경, 이민/시민 신분, 결혼 상태,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별 인식, 장애 및 경제력과 상관 없이 모든 권리를 부여 받을 권리.
3. 정기적인 문서 및 구두로 교사 및 교직원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자녀의 학습 진전, 사회성 및 품행상의 개선에 관한 염려와 관심 사항을 상의할 수 있는 권리.
4. 수업일 중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
5. 확정된 절차에 맞게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
6. 학년 중 학교에서 자녀의 학습 진전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적절하다면, 다른 학교 직원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기 위해 의미 있고 생산적인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7. 정기적으로, 비공식 및 공식적인 성적표를 통해 자녀의 학업 및 품행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8. 교육감 규정 A-443 및 규율규정에 제시된 대로 자녀가 징계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적합한 징계절차를 요구할 권리.
9. 자녀의 학교가 적절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학교나 수업에서 제외시킨 경우, 교육청의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거나 호소할 권리.
10.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 리더십 팀에 참가하도록 권유 받고

팀의 업무나 교육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협조 받을 수 있는 권리 (예: 새 회원 오리엔테이션, 지속적인 전문적 계발).

11. 자녀와 관련된 심의, 회의, 인터뷰 및 기타 회의에 학교 직원이나 행정인의 예비 승인 없이 기존 절차에 따라, 친구, 조연자 또는 통역사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
12. 학부모님이 청각 장애인일 경우, 자녀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또는 규율에 관련한 모든 회의 또는 활동에 참여할 때 사전 서면요청을 하면 수화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 수화통역사 제공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적절한 대체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13. 학교 직원들이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학교 개방 주간, 학교 리더십 팀 모임, 학부모회, CEC 모임 등과 같은 중요한 안내통지문을 학부모님에게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할 권리.
14.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15. 자녀의 학교 입학 시 또는 추후에 요청할 경우, “학부모 권리 및 의무 조항”, “학생 권리 및 의무 조항”, 규율규정(Discipline Code) 및 특정한 학교 규정 등의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
16. 학교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안전, 영양, C-30 레벨 I).
17. 교육감 및 교육청에서 설립한 학부모 자문 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예: 워크 그룹, 임시 특별 전문 위원회, OFEA-타이틀 I 뉴욕시 학부모 위원회).
18. 법률 및 교육감 규정 D-140. 150 그리고 160 에 의거하여,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경우, 후보로 출마할 권리, 또는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부모협의회나 학부모교사협의회의 회장, 서기, 또는 재무 부장의 직을 맡고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19. 공개회의 법(Open Meeting Law)인 “햇볕 법률” (Sunshine Law)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되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와 교육정책 패널에서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20. 확정된 절차에 맞게 커뮤니티 및 뉴욕시 교육 위원회 공개 회의 및 교육 정책을 위한 패널에 참여할 권리.

####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항의 및 이의 제기에 관한 권리**

교육감은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제기를 확정하는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이 절차들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있는 교육감 규정에서 설명됩니다: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

#### **학부모님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교육감 규정 A-101 에 따라 거주지에 의거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2. 교육감 규정 A-420 에 따라 단체 체벌에 대해 항의할 권리.
3. 교육감 규정 A-443 에 따라 교장이나 교육감의 정학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4. 교육감 규정 A-450 에 따라 원하지 않은 전학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5. 교육감 규정 A-501 에 따라 진급관련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6. 교육감 규정 A-655 에 따라 학교 리더십 팀 선거에 관한 항의 및 이의 제기할 권리.
7. 교육감 규정 A-660 에 따라 학부모회와 회장 위원회 선거, 논쟁, 활동 및 비활동에 관한 항의 및 이의 제기할 권리.

8. 교육감 규정 A-701 에 따라 예방접종 면제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9. 교육감 규정 A-710 에 따라 섹션 504 계획의 위탁, 평가, 계발, 그리고/또는 실행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권리.
10. 교육감 규정 A-780 에 따라 임시의 거주지에 기거하거나 홈리스인 아동의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1. 교육감 규정 A-801 에 따라 교통편 제공 자격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2. 교육감 규정 A-810 에 따라 무료 및 절감된 급식을 받을 자격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3.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사항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자녀의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수정을 요청할 권리.
14. 교육감 규정 A-830 에 대해 차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15. 교육감 규정 D-110 에 따라 정보법의 자유에 일치하여 교육청에 의해 관리되는 공개 기록을 이용할 권리가 부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6. 교육감 규정 D-140 에 따라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일원의 지명 및 선택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권리
17. 교육감 규정 D-150 에 따라 뉴욕시 특별교육 위원회의 일원의 지명 및 선택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권리
18. 교육감 규정 D-160 에 따라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의 일원의 지명 및 선택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권리
19. 낙오 아동 방지법 하의 다음의 행정적인 프로그램 (예: 타이틀 I 및 II, 파트 A 및 D, 타이틀 III 및 타이틀 IV, 파트 A) 과 위에서 나열된

교육감 규정에서 다루는 절차를 통해 제기될 수 없는 그 이외의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할 권리

**모든 학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1. 학습할 준비가 된 상태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
2. 자녀를 충실히 정시에 학교에 출석시킬 의무.
3. 학교 안내문을 통해 자녀의 학교 학습과 진전 상황,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녀에게 학교에 대해 대화하며, 자녀의 숙제와 성적표를 살펴보고, 교직원과의 면담에 참여할 의무.
4. 자녀의 교육 진전과 관련해 자녀의 교사 및 교장 선생님과 구두로 또는 문서로 연락을 유지할 의무.
5. 자녀의 교육에 관계되는 학교의 모든 규칙과 적용될만한 교육감 규정을 준수할 의무
6. 학교의 연락에 신속히 응답할 의무.
7. 자녀와 관련되어 참석을 요청하는 모든 모임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
8. 학교 건물에 정중한 태도로 들어오며, 무례한 행동을 삼가고, 모든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의 그 외 일원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하는 의무.

**학부모님은 또한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 자녀가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습 지원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책임.
2.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습득 및 가치관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에서 재교육시킬 책임.

3.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시간, 기술, 자원을 제공할 책임.
4. 교육과 관련된 의사 결정 참여권을 부여하는 학교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참가할 책임.
5. 학교의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이 될 책임.
6. 해당되는 경우 타이틀 I 학부모 위원회의 적극적인 일원이 될 책임
7. 학교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과제 수행, 출석 및 품행에 대해 자녀에게 확인할 책임
8. 타인의 물건, 안전 및 권리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위협, 괴롭힘 또는 차별 등의 행동을 삼갈 중요성에 대해 가르칠 책임.